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94. 9. 12.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8. 2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4. 8. 31.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4. 9. 9.) 상정, 질의토론
제24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94. 9. 12.)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윤병여 시민국장)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2조)
-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조)
-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근거하여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회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 아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95년도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동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동 조례안 제2조제2항중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여 아동위원의 임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6조(시행규칙)”은 관련내용 겸토결과 “제6조(운영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 동 조례안에 협의회의 회의록 작성등과 간사와 서기의 관직명칭도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홍성환 위원) : 구 아동위원은 몇명이며, 수당은 모든 위원에게 지급해야 하는가?
- 답변(윤병여 시민국장) : 구 아동위원은 동별 2인씩이며, 명예직으로 되어 있어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음.

- 질의(홍성환 위원) : 그렇다면 왜 “수당등 지급” 조문을 규정하였는가?
- 답변(윤병여 시민국장) :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규정하였다.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4. 9. 12. 정연우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아동위원회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회의록, 간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수정주요골자

-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4조)
-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5조)
-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간사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1994. 8. 27.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회의 담당구역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협의회는 각동의 아동위원회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2조)
- 나. 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조)
- 라.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조례(안) : 별첨

4. 제정근거

- 아동복지법(1981. 4. 13. 법률 제3438호) 제7조
- 아동복지법시행령(1993. 8. 30. 대통령령 제13968호) 제4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15조
- 지방자치법시행령(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제42조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질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4. 9. 12.

제 안 자 : 시민보건위원회

1. 수정이유

- 아동위원회의회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회의록, 간사규정을 신설하는 등 회의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 회장과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를 정함(안, 제4조)
- 회장과 부회장의 직무를 정함(안, 제5조)
-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간사를 정함(안, 제7조, 제8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증 “운영”을 “운영등에관한”으로 한다.

안 제2조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안 제5조를 제9조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6조를 제10조로 하고, 제목을 “운영규정”으로 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회의록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

원안·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안)</p> <p>제 1 조(목적) (생략)</p> <p>제 2 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도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퇴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3 조(협의회의 기능)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p> <p>제 1 조(목적) (원안과 같음)</p> <p>제 2 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 3 조(협의회의 기능) (원안과 같음)</p> <p>제 4 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 5 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p> <p>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퇴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6 조(협의회의 회의등)(원안 제4조와 같음)</p> <p>제 7 조(회의록등)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p> <p>② 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계장이 된다.</p>

원 안	수 정 안
<u>제5조(수당등 지급)</u> (생략) <u>제6조(시행규칙)</u>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 다.	<u>제9조(수당등 지급)</u> (원안 제5조와 같음) <u>제10조(운영규정)</u>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4. 9. 9.

시민보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5. 14.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94. 5. 20.
 다. 상정일자 : 제23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4. 7. 5.) 상정, 질의토론
 제24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94. 9. 9.) 질의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조만형 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시행에 불필요한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로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2항의 우리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중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및 주차요금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동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과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기하는 데 있으며,
- 상기 각호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아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이종일 위원) : 자치구 위임 사항이 아닌 도시가스요금, 지방공사의료기관의 의료수가, 주차요금 등 3가지를 삭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이므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당시 기안자에게 경고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답변(윤병여 시민국장) : 공무원이 검토를 잘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당시 물가계장이 지금은 상암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